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347호(23.6.23) 「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」  
**2023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**

『사 전 교 육』

2023년 하반기  
**모 / 집 / 안 / 내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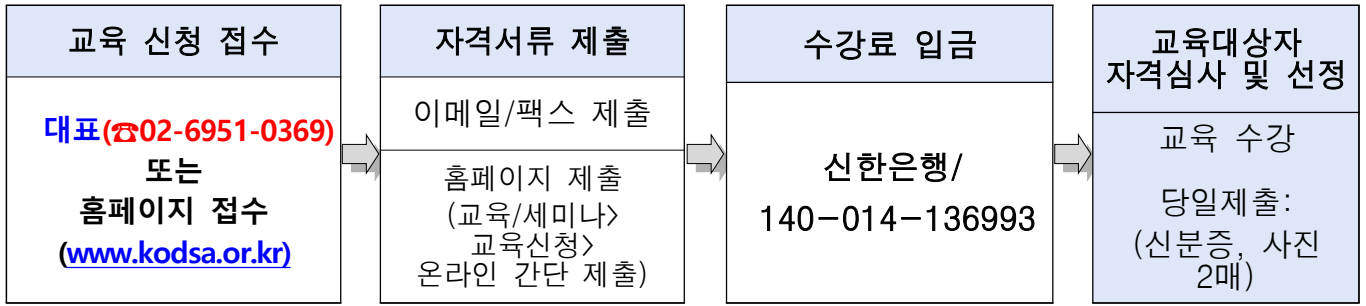
# 1.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안내 『사전교육』

한국부동산개발전문가협회는 국토교통부 지정 「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」으로 국내 최고의 부동산개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·연수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, 2023년도 하반기 「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」 교육내용을 안내합니다.

구 분	내 용										
교육명	2023년 『부동산개발 전문인력 하반기 '사전교육』										
1.교육대상	<p>◆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[별표1]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해당자 (※붙임 1 참고)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 <p>가. 전문 자격사</p> <p>- 변호사,공인회계사,감정평가사, 공인중개사,세무사,법무사,건축사, 자산운용전문인력</p> </td> <td> <p>나. 건설기술진흥법상 기술경력자</p> <p>- 토목·건축·도시·교통·조경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인자</p> </td> <td> <p>다.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</p> <p>- 부동산의 취득·처분·관리·개발 또는 자문관련 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자</p> </td> </tr> </table> <p>※ 전문인력 사전교육 자격증빙서류 제출관련 문의는 사무처로 상담 부탁드립니다.</p> <p><b>☎ 교육 상담(사무처) : Tel. 02.6951-0369</b></p>			<p>가. 전문 자격사</p> <p>- 변호사,공인회계사,감정평가사, 공인중개사,세무사,법무사,건축사, 자산운용전문인력</p>	<p>나. 건설기술진흥법상 기술경력자</p> <p>- 토목·건축·도시·교통·조경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인자</p>	<p>다.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</p> <p>- 부동산의 취득·처분·관리·개발 또는 자문관련 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자</p>					
<p>가. 전문 자격사</p> <p>- 변호사,공인회계사,감정평가사, 공인중개사,세무사,법무사,건축사, 자산운용전문인력</p>	<p>나. 건설기술진흥법상 기술경력자</p> <p>- 토목·건축·도시·교통·조경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인자</p>	<p>다.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</p> <p>- 부동산의 취득·처분·관리·개발 또는 자문관련 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자</p>									
2.교육일시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10월</th> <th>11월</th> <th>12월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사전교육</td> <td>10.16(월)~10.25.(수) ▶(8일간: 주간반) PM 13:30~21:20</td> <td>11.06(월) ~ 11.20.(월) ▶(13일간: 야간+주말,종일반) 야간PM 18:00~21:50 주말AM 09:30~18:20</td> <td>11.27(월)~12.06.(수) ▶(8일간:주간반) PM 13:30~21:2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교육수강 인원내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별도 안내합니다.</p>			구 분	10월	11월	12월	사전교육	10.16(월)~10.25.(수) ▶(8일간: 주간반) PM 13:30~21:20	11.06(월) ~ 11.20.(월) ▶(13일간: 야간+주말,종일반) 야간PM 18:00~21:50 주말AM 09:30~18:20	11.27(월)~12.06.(수) ▶(8일간:주간반) PM 13:30~21:20
구 분	10월	11월	12월								
사전교육	10.16(월)~10.25.(수) ▶(8일간: 주간반) PM 13:30~21:20	11.06(월) ~ 11.20.(월) ▶(13일간: 야간+주말,종일반) 야간PM 18:00~21:50 주말AM 09:30~18:20	11.27(월)~12.06.(수) ▶(8일간:주간반) PM 13:30~21:20								
3.교육장소	서울교육장: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5 (삼성동 37-18) <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층 201호>		분당선, 9호선 '선정릉역' 2번 출구 앞								
4. 교육비	사전교육 (1 Class 60명 정원 기준) - 1인당 880,000원 (교재대 포함)										
5.입금계좌	<p>◆ 신한은행 140-014-136993/ (예금주: 사단법인 한국부동산개발전문가협회)</p> <p>※ 계산서 발급 희망 시 "사업자등록증 사본"을 Fax 02-2039-0287로 제출</p> <p>※ 본 협회는 장학사업으로 "현직 공무원 및 군경 유자녀" 限하여, 소정의 장학금 지급 함.</p>										
6.제출서류	<p>1. 교육신청서 1부.</p> <p>2. 개인정보의 수집.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.</p> <p>3.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서류 일체. (사본)</p> <p>4. 신분증, 사진 2매. (교육 당일 제출)</p> <p>※ 홈페이지 "교육/세미나&gt;사전교육 신청" 서식 참고</p> <p>※ 이메일: (kodsamaster@kodsas.or.kr) 또는 (팩스: 02-2039-0287) 제출.</p>										

☞ 교육접수 : 대표전화(☎ 02-6951-0369)로 사전 예약 접수 중 이며, 홈페이지([www.kodsas.or.kr](http://www.kodsas.or.kr)) 에서도 간편 접수 가능함.


## ■ 신청 절차안내





- ※ 첨부 : 1.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 
 2.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증빙서류  
 3.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과정  
 4.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장소  
 5.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신청서 & 동의서


부 동 산 개 발 전 문 인 력 [ 사 전 교 육 ]


# 교육신청 접수

국토해양부-35호  
  
 KODSA  
 (사)한국부동산개발전문가협회

 **협회 홈페이지([www.kodsa.or.kr](http://www.kodsa.or.kr)) 접속**  
 상단 메뉴 "교육/세미나" → "사전교육 신청" 선택

 **교육안내문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, 확인**  
 교육안내문 내용 확인, "신청서+동의서" 작성

 **온라인 교육신청 또는 이메일/팩스 신청**  
 "사전교육 신청" → 교육신청 → 간단 온라인신청

 **(신청서+동의서+전문자격 서류) 제출 방법**

(1) 온라인 교육신청 시, "첨부파일" 온라인 제출  
 (2) 이메일 → (KODSAMASTER@KODSA.OR.KR) 또는  
 팩 스 → (☎ 02-2039-0287) 로 서면 제출  
 (3) 제출 서류 (\*수강신청자의 책임하에 구비.)  
 - 사전교육 신청서, 동의서 제출.  
 - 각 전문인력범위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자격 증빙서류

##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

-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(제9조1항 관련),
-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3조 ~ 제11조.

<b>가. 법 률</b>	1. 법률사무에 <b>2년 이상</b> 종사한 <b>변호사</b>
<b>나. 부동산개발 금융</b>	1. '공인회계사'로서 해당 분야에 <b>3년 이상</b> 종사한 자 2. '자산운용전문인력'으로 <b>3년 이상</b>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3. '상호저축은행', '은행', '증권금융회사'에서 <b>10년 이상</b> 근무한 자로서 <b>부동산개발금융(PF등)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</b> 종사한 자
<b>다. 부동산개발 실무</b>	1. <b>감정평가사</b> 로서 평가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. 2. <b>법무사, 세무사,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자</b> 로서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·개인사무소, 부동산투자회사·자산관리회사 및 이에 준하는 회사·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·처분·관리·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(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) 이상 종사한 자. ※ <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>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<b>등록사업자</b> ② 「주택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<b>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</b>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④ 그 밖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<b>부동산개발업자</b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                    ※ <b>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의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</b>                      - 최근 5년 이내 건축 연면적 5천 m<sup>2</sup> 또는 토지 면적 1만 m<sup>2</sup> 이상                      - 최근 5년 이내 부동산개발부문 매출액 150억원 이상                      ※ <b>부동산 관련 분야</b> : 경영학,경제학,법학,부동산학,지리학,도시공학,토목공학,건축학,건축공학,조경학의 10개 학과 및 이외 국립대학에 개설된 10개 동일 학과의 전공과목 중 16개 과목(48학점)을 이수한 경우(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6개 과목(18학점) 이수)                 </div> 3.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조제8호 따른 토목·건축·도시·교통·조경 분야의 <b>고급기술인</b> 이상인 자. 4. 건축사 5. 다음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·처분·관리·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. <b>국가, 지방자치단체</b> : 5급(7급)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부동산개발 제도의 수립, 운용, 인가 등 업무에 3년(5년)이상 경력자 나.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조②에 따른 <b>공공기관</b> 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.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<b>지방공사 및 지방공단</b> :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라. 부동산개발 사업실적·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<b>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</b> 에서 부동산의 취득·처분·관리·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

## 「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증빙서류 안내」

전문인력의 종류 (※ 해당 경력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반드시 1가지만 선택)		자 격 증 빙 서 류		
		자격·학위증명서 (사본)	경력증명서 (원본)	종사기관 증명서 (사본)
1. 자격자	<input type="checkbox"/> 변호사	■ 변호사등록증 (사법연수원 수수료증)	■ 법률사무중사 경력증명서 (2년이상) ※ 협회가 발행 + 최근 3개월 이내+ (해당 기간별 종사업무 표기)	
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인회계사	■ 공인회계사 등록증	■ 해당분야중사 경력증명서 (3년 이상) ※ 협회가 발행 + 최근 3개월 이내+ (해당 기간별 종사업무 표기)	
	<input type="checkbox"/> 감정평가사	■ 감정평가사등증 (합격증서, 실무수습증서)	■ 해당분야중사 경력증명서 (3년 이상) ※ 협회가 발행 + 최근 3개월 이내+ (해당 기간별 종사업무 표기)	
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인중개사 법 무 사 세 무 사	■ 자격증	① 개발업 법인/개인사무소 경력증명서 (3년 이상/ 해당 기간별 종사업무 표기) ②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	■ '사업실적' 또는 '매출액' 증명 사업실적: 최근 5년 이 내 (건축 5천㎡ 토지 1만 ㎡이상) 또는, 매출액 최 근 5년 이내 부동산 개발 부문 매출액 150억 이상
	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사	■ 자격증	-	-
	<input type="checkbox"/> 건설기술자 (고급 / 특급기술인)	-	■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(토목, 건축, 도시교통, 조경분야) ※ 협회가 발행 + 최근 3개월 이내+ (해당 기간별 종사업무 표기) (※ 협회: 한국건설기술인협회, 대한건축사 협회, 대한측량협회, 한국건설감리협회)	-
	<input type="checkbox"/> 자산운용 전문인력	■ 국토부 등록 확인서	-	-
2. 학·석 사학위 경력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학석사 학위 경력자	■ 졸업증명서 또는 ■ 학위수여증명서 (해당 학과 확인)	① 개발업 법인/개인사무소 경력증명서 - 학사3년 이상/ 석사2년 이상 - 해당 기간별 종사업무 표기 ②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	■ '사업실적' 또는 '매출액' 증명 사업실적: 최근 5년 이 내 (건축 5천㎡ 토지 1만 ㎡이상) 또는, 매출액 최 근 5년 이내 부동산 개발 부문 매출액 150억 이상
3. 실무 경력자	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기관	① 은행(제1금융권), 상호저축은행, 증권금융회사 종사 경력 증명서 * 10년 이상 근무 &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 3년 이상 종사자 - <해당 기간별 종사업무 표기 필요>		-
	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·지자체	① 해당기관장 발행 경력증명서 - 5급이상 (3년 이상), - 7급이상 (5년 이상) - <해당 기간별 종사업무 표기 필요>		-
	<input type="checkbox"/> 공공기관	① 해당기관장 발행 경력증명서 - 10년 이상 - <해당 기간별 종사업무 표기 필요>		-
	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공사· 지방공단	① 해당기관장 발행 경력증명서 - 10년 이상 - <해당 기간별 종사업무 표기 필요>		-
	<input type="checkbox"/> 7년 이상 개발경력자	① 개발업 법인/개인사무소 경력증명서 (7년이상)/ 해당 기간별 종사업무 표기 ②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		■ '사업실적' 또는 '매출액' 증명 사업실적: 최근 5년 이 내 (건축 5천㎡ 토지 1만 ㎡이상) 또는, 매출액 최 근 5년 이내 부동산 개발 부문 매출액 150억 이상

## 「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 교육과정」

교 과 목	교육내용	시 간
<b>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</b>	- 부동산개발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 - 부동산개발전문가의 에티켓 관리 등	3H
<b>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해설</b>	- 부동산개발업 법령(법/ 시행령/규칙 등) 해설 - 부동산개발업 법령 관련 질의회신	3H
<b>부동산개발업자의 역할과 기능</b>	- 부동산개발전문가의 역할 - 부동산개발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능력	3H
<b>부동산개발 관련 공법</b>	- 국토계획법(도시,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와 결정, 효력 등) - 도시개발법과 공간정보관리법의 주요 내용 - 공공주택 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의 주요 내용 - 주택법과 건축법의 주요 내용	12H
<b>부동산개발 관련 조세 및 회계</b>	- 개인과 법인의 주거와 비주거 부동산의 취득, 보유, 개발, 양도 등에 따른 세제 실무 - 부동산개발사업(주거/비주거)과 관련된 핵심 회계처리 내용	6H
<b>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 관리</b>	- 부동산개발사업(주거용과 비주거용) 단계별 체크리스트 - 잠재 우발 리스크 대응 및 관리요령 등	3H
<b>부동산개발사업의 입지 및 타당성 분석</b>	- 주거 및 비주거용 입지분석의 유형과 선정 원칙 - 시장분석과 시장성 조사 및 분석 - 수익성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방법 - 유형별 Cash Flow 분석 등	6H
<b>부동산개발사업의 기획과 마케팅</b>	- 개발사업 컨셉 선정 및 아이템 등 결정 - 사업규모 결정 및 사업방법 결정 - 개발사업별 상품기획 및 마케팅 전략 등 수립	4H
<b>부동산개발 금융과 자금조달기법</b>	- 부동산개발 금융의 새로운 유형 및 기법 -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와 신용보강, 책임준공 등 PJ대출에 대한 이해와 실제 -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산유동화와 간접투자를 통한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이해와 실무	6H
<b>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절차 및 사례</b>	- 부동산 개발사업 시설별 사업추진 절차 및 시행사례 -사업성 검토 및 개발이익 산정 등 - 부동산 개발사업 시설별 사업추진 절차 및 시행사례 (1) - 주거용, 물류센터, 데이터센터 등 - 부동산 개발사업 시설별 사업추진 절차 및 시행사례 (2) -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시행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- 부동산 개발사업 시설별 사업추진 절차 및 시행사례 (3) - 공공택지내 공급용지별 공급대상과 특징 및 성공적인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- 조별 실습과제 발표	12H
<b>종합평가 및 수료</b>	- 교육수료를 위한 평가시험 실시 - 수료증 발급 및 수료식 거행 등	2H

# 「서울 강남 교육장소 안내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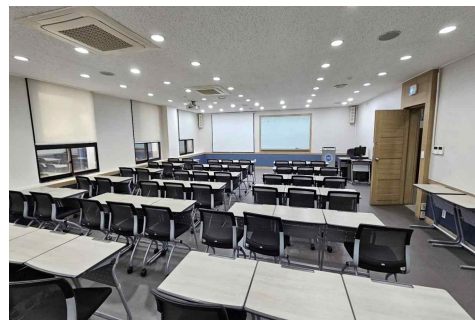
■ 교육장소

## 한국부동산개발전문가협회 「서울교육연수원」

주소: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05 (삼성동 37-18)  
<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층 201호>



※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“대중교통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[프로젝트 등 멀티미디어시설 , 인터넷 편의시설 등, 강의장 모습]

■ 교통편



[지하철]

- ☞ 분당선 선정릉역 하차 후, 2번 출구 앞
- ☞ 9호선 선정릉역 하차 후, 2번 출구 앞



[버스]

- ☞ <무형문화재전수회관> 정류장 하차 후, 사거리방향 도보 5분
- 마을 강남 07, 지선 4412, 간선 472

[※ 붙임 5]

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[별지 제1호서식]

##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『사전교육』 신청서

① 성 명				사진 (3.5cm×4.5cm)
② 생 년 월 일				
③ 주 소	※ 자택 <u>도로명 주소</u> 를 정확히 기재 요청.			
④ 직 장 명				
⑤ 연 락 처	※ 수강자 <u>핸드폰번호</u> 로 기재 요청.			
⑥ 희망교육일시				
⑦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해당 범위	자격자	<input type="checkbox"/> 변호사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인회계사 <input type="checkbox"/> 감정평가사 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사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인중개사 <input type="checkbox"/> 건설기술자(고급기술인 이상) <input type="checkbox"/> 법무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세무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산운용전문인력		
	학·석사학위 경력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학사학위 경력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석사학위 경력자		
	실무경력자	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기관 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·지자체 <input type="checkbox"/> 공공기관 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공사·지방공단 <input type="checkbox"/> 7년 이상 개발경력자		
⑧ 면제대상확인 및 면제신청과목 (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 8조)				
면제 대상 확인	<input type="checkbox"/> 변호사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인회계사 <input type="checkbox"/> 감정평가사 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사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인중개사 <input type="checkbox"/> 건설기술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법무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세무사		면제 과목 신청	
<p>상기 본인은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5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육 대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함을 확인하고, 교육 중 또는 교육이수 후라도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교육이수의 효력이 상실됨은 물론, 이를 이유로 교육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신청인</b> <span style="float: right;">(서명 또는 인)</span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한국부동산개발전문가협회 회장 귀하</b></p>				

### 구비서류 (※ 수강신청자의 책임하에 구비 요)

신청인 제출서류	1. 「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1항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: 「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」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2. 「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교육 면제대상 : 면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-------------	---



[※ 붙임 6]

[개인정보의 수집.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]

##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운영

1.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근거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전문가협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·이용하고 있습니다.
  - ◎ 개인정보의 수집.이용 목적: 교육 수강신청, 교육자격 심사, 교육 진행, 교육 운영 등에 활용
  - ◎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휴대폰번호, 전화번호, 이메일, 회사명 등
  - ◎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: 전문가협회에서 수집.계속 관리
2.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운영을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, 전문가협회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교육생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.
3. 전문가협회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교육생은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·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4. 전문가협회는 교육결과 보고를 위해 교육생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.
  - ◎ 제공기관 : 국토교통부, 부동산개발업법에 의거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기타기관 등
  - ◎ 제공목적 : 「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」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교육생 확인.요청 및 보고 등
  - ◎ 제공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국토교통부, 기타기관 등에서 수집. 계속 관리
5. 본인은 위 1 ~ 4의 내용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.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? (해당란에 √표시)

동의함  동의하지않음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“이론을 검증한  
실무전문가 **Group**”



“4차산업을 선도하는  
부동산개발전문가들의  
집단지성이 발휘되는 **Group**”

국토해양부-35호



서울교육  
연수원

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96길 6, 11층 1104호

web: <http://www.kodsa.or.kr>

Tel. ☎02-6951-0369

Fax. ☎02-2039-0287

**(사)한국부동산개발전문가협회**